

정당한 구직급여 수급권은 국적과 관계없이 적극 보장하되, 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9.21.(월) 한국경제, “외국인 실업급여 최대. 80%가 조선족·중국인” 기사 관련

2. 설명 내용

- 구직급여는 국적과 관계없이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라 보험 가입 후 수급 자격*을 취득한 비자발적 이직자를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음

*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하고,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하여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할 것

- 지난 '21년 이후 체류 외국인과 외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각각 83만명(42.2%)* 및 28만명(158.8%)** 증가

* 체류 외국인(법무부): ('21년) 195.7만명 → ('25년) 278.3만명

**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(고용보험 DB): ('21년) 17.7만명 → ('25년) 45.9만명

- 이에 따라 외국인 가입자에게 부과된 고용보험료는 '21년 929억원 → '25년 1,773억원으로, 844억원(90.8%) 증가
- 반면,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 수(15,421 → 16,789명)는 1,368명(8.9%), 지급액(1,000 → 1,134억원)은 134억원(13.4%) 증가

- 한편, '25년 기준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(172만명) 중 외국인(1.7만명) 비중은 1.0%, 지급액(전체 12.4조원)은 0.9%(1,134억원) 수준

- 또한 '25년 기준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 중 반복수급자는 비중은 1.9%로, 전체 수급자 중 반복수급자 비율(6.6%)보다 낮은 수준

□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특정 국적(중국동포·중국인)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의 90.4%는 영주F-5, 재외동포F-4, 결혼이민F-6 체류자격 보유자로,

○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정주형 체류자격을 보유하여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*이 상대적으로 높고,

* '25년 전체 외국인 수급자의 85.4%(14.3천명)이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. 3년 이상 가입자도 45.4%

○ 이직 전 근무 사업장 중 건설업(28.8%), 숙박 및 음식점업(19.8%) 등 고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*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

* 내국인은 각각 13.5%(건설업), 6.6%(숙박 및 음식점업)

□ 정부는 국적과 관계없이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정당한 구직급여 수급권은 적극 보장하되,

○ 구직급여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출입국 기록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허위·형식적 구직활동과 부정수급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음

○ 또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구직자들에 대한 재취업 지원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8월 발표한 「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*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음

* ▲ 「나만의 AI 고용센터」를 통해 개인 맞춤형 취업 지원,

▲ 「Case Manager」를 통해 전문가가 한 명을 밀착 상담 등

담당 부서	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	책임자	과 장	손성길 (044-202-7368)
		담당자	사무관	곽필순 (044-202-7371)

